

[보도자료 별첨]

---

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 
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

---

2016. 8. 2.

금융위원회

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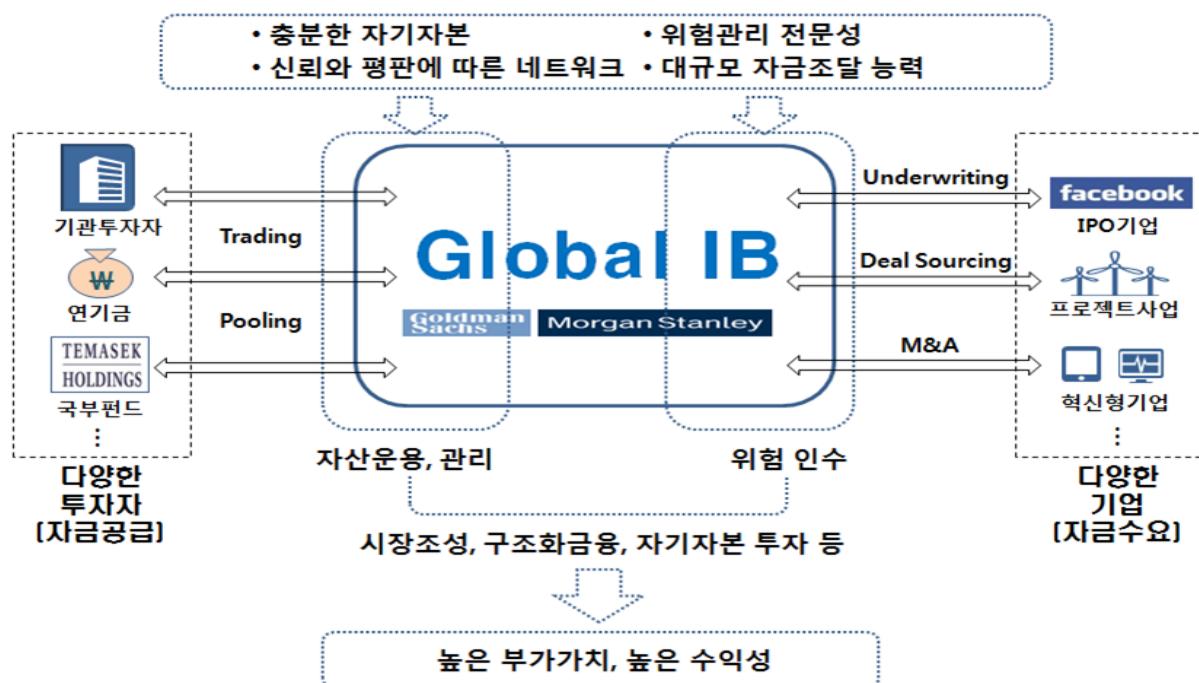
I . 추진배경 .....	1
II . 기본방향 .....	8
III. 세부 추진방안 .....	9
1. 기업금융 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허용 .....	9
2. 원활한 기업금융 제공을 위한 규제 개혁 .....	12
3. 신규업무 확대를 통한 기업금융 서비스의 다양성 제고 .....	15
4.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글로벌 사업역량 확충 .....	17
IV .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 기준정책 추진방향 ..	18
V . 기대효과 .....	20
VI. 향후계획 .....	22

# I. 추진배경

## 1 왜 초대형 투자은행이 필요한가?

- 투자은행(investment banking)은 증권 인수(underwriting) 등 투자의 형태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로 출발
- 투자은행의 영역은 M&A, 프로젝트파이낸싱,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(loan financing) 등으로 확대되어 왔으며, 기업이 원하는 “최적의 방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비즈니스”의 의미로 변화
- 투자은행은 ①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충분한 「자본력」, ②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「전문성」, ③ 투자자와 자금수요자 등 시장의 신뢰와 평판에 바탕한 「네트워크」, ④ 이를 활용한 「대규모 자금조달 능력」을 기반으로
  -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기업금융을 효과적으로 수행
  - 이를 통해 자금순환의 효율성을 개선시키고, 위험을 인수하는 대가로 높은 수익을 향유

### 【 초대형 글로벌 IB의 영업구조 】



- 특히 우리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은행 중심의 “종합 기업금융서비스” 확대가 필요
- 은행과 벤처캐피탈 중심의 자금공급만으로는 우리경제를 이끌어 나갈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형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나 자금공급에 한계
  - \* 대출중심의 은행은 기업의 성장에 따른 과실을 누릴 수 없어 고위험 자금공급 유인 부족
  - \* 벤처캐피탈은 자본력이 취약하여 자금공급액의 절대규모가 작고(2015년 2조원이 사상최대치), 과감한 장기 투자가 어려움

⇒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형 기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투자은행의 역할 강화 필요

- 투자은행은 다양한 자금공급 수단과 넓은 업무영역을 바탕으로 기업활동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지원 → 기업 생애주기별 “맞춤형 금융”을 통해 효과적인 자금공급 가능
  - \* 벤처.중소기업 → 자기자본 투자, 신용공여, IPO주선
  - 중견기업.대기업 → 주식.채권인수, 구조화금융, M&A 증개 등

- 또한, 세계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,\* M&A 증개.주선 등을 통한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 필요성 점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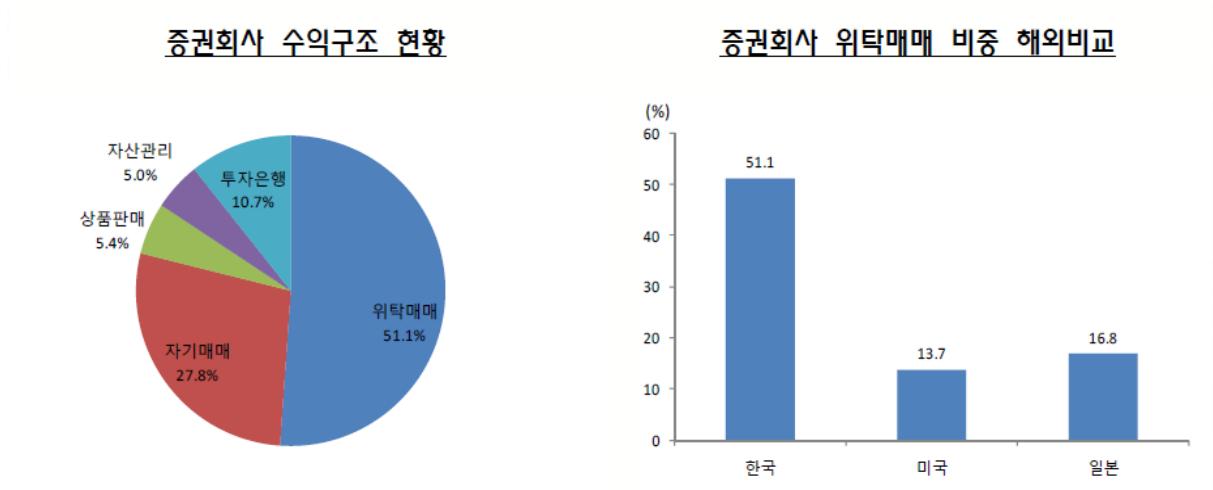
\*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100억 달러(약 12조원)이상

⇒ 국내기업들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참여 및 M&A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 출현 필요성 증대

## 2 우리나라 IB 업무의 현 주소

- 정부는 신성장 동력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
    - 자기자본 3조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게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
  - 그러나 제도 도입 후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우리 증권산업은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
    - 제도적으로 우리 증권사가 영위가능한 IB 업무의 범위는 해외 투자은행들과 유사\*하나 여전히 위탁매매와 같은 “중개업”的 영역에 머물고 있어 IB 업무의 경쟁력은 크게 뒤쳐진 상황
- \* 인수, M&A, PF자문·주선, 기업신용공여,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 글로벌 IB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영위 가능

### 【 국내 증권사의 수익구조와 위탁매매 비중 해외 비교('14) 】



※ 자료 : KDI·금융투자협회

## ① 미흡한 자본규모

-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경우 투자은행으로서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**자본규모가 충분치 못하다는 평가**
  - \* 국내 6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은 3조원 ~ 6조원대로 일본 노무라(28.1조원), 중국 중신증권(25.6조원), 말레이시아 CIMB(11.7조원) 등 아시아 주요국 대표 증권사들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
  - 자본규모가 영세하고, 자금조달 능력이 취약하여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

## ② 고비용 자금조달 구조

- 투자은행이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할 필요
- 국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경우 RP(37%), ELS(36%)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전체 자금조달액의 73%에 달함
  - RP의 경우 만기가 짧고(95%가 1주일이내), RP.ELS는 담보채권 또는 헤지자산 보유가 불가피하여 자금 활용도가 떨어짐

## ③ 종합적인 기업금융서비스 제공능력 부족

- 기업의 자금조달이나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가 다양화되면서 주식, 채권, 대출, 구조화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융합하여 최적의 금융서비스를 제시하는 것이 투자은행의 중요한 역할로 대두
-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기업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,
  - 은행에 비해 높은 자금조달 비용과 엄격한 자본규제 등으로 인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금융서비스 영역은 여전히 증권을 매개로 한 중개업무 형태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
    - \* (프라임브로커 업무) 수익구조가 주식 증개·대차거래에 편중되어 증권사 기존업무와 차별화가 부족한 실정 (수익기여도 1% 미만)
    - \* (기업 신용공여) 규모는 점차 증가( '13년말 1.1조원 → '16.5월말 4.7조원)하고 있으나, 부동산 PF.M&A 관련 브릿지론이 대부분으로 전문화된 기업금융기능이 부족하고 수익기여도도 미미(5% 내외)

#### ④ 글로벌 경쟁력 미흡

- 투자은행이 대규모의 자기자본, 차별화된 자금조달·공급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영역을 국제적으로 확장할 필요
  - \* 투자은행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동반자로서 해외 증권발행, M&A,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
  -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초대형 투자은행들이 앞장서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필요
  - 그러나 글로벌 업무경험과 해외 네트워크의 부족 등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사업영역은 거의 국내시장에 국한
  - \* '13년 ~'16.4월 국내 공기업의 해외 증권발행 64건 중 국내 증권사 참여는 10건에 불과 → 국내 증권사는 국내 공기업의 해외물량마저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

### 3 해외 투자은행의 발전 양상

#### □ 해외 IB들은 대형화·겸업화·글로벌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

- ① 해외 주요 IB들은 수 차례의 적극적인 M&A\*를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, 취약부문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업영역을 다각화
  - \* Morgan Stanley 8회, Goldman Sachs 4회, Merrill Lynch 11회(BOA 합병 전까지)
  - \* 15년말 자기자본 : Morgan Stanley 88.5조원, Goldman Sachs 102.1조원
  - 최근 수년간 아시아 지역시장 선점을 노리는 중국·일본 IB들의 글로벌 M&A도 활발
  - \* 노무라증권의 리만브러더스 인수(인수 5년만에 흑자전환 성공), 중국 중신 증권의 CLSA인수('13), 해통증권의 BESI(포르투갈 IB) 인수('14) 등
  - 아시아 역내 경쟁 투자은행들의 대형화·국제화로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국내증권사와의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
  - \* 미래에셋-대우증권 합병증권사(자기자본 6.7조)는 자기자본 기준 아시아 12위 수준이며, 현재 자기자본 1위인 NH 투자증권(4.5조)는 아시아 15위 수준

② 다양한 업무간 시너지를 강화하여 고객의 수요에 맞는 복합적인 금융서비스 공급체계 구축

- 해외 투자은행들은 기업이 원하는 모든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·권역간 협업 등을 강화
  - \* (예) 상업은행, 투자은행 서비스의 구분 없이 기업이 원하는 모든 금융 서비스(대출, 증권, M&A 등)를 한번에 통합 제공(full package)
- 아울러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등 기업금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자금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고,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해 나가는 추세

③ 금융위기 이후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기업금융 업무 등 핵심 사업영역에 역량을 집중(기본으로의 회귀 “back to basic”)

- M&A·재무자문, 증권인수 등 전통적 IB 업무에 집중\*하는 한편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자산관리 등 사업영역을 다각화
  - \* 2014년 전 세계 투자은행의 기업금융 수수료는 전년대비 6.8% 증가한 901억 달러에 달하였으며,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5%의 성장세를 지속
- 자기자본 투자(PI), 채권·원자재 트레이딩(FICC) 등 고위험 업무 비중은 축소해 나가는 추세
-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경우는 PI, FICC 등 고위험 IB 업무는 물론, 인수·M&A 등 전통적 IB업무도 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  $\Leftrightarrow$  IB 업무 영역의 육성을 도모할 필요
  - \* 해외 주요 투자은행의 IB업무 관련 사업부의 수익기여도는 50~60%에 달하나, 국내 대형증권사는 10% 내외에 불과

## 4 국내 투자은행 육성방향 -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

◇ 증권사가 적극적인 위험인수가 필요한 기업금융 업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대형화를 유도

### ① 적극적인 위험인수(risk-taking)를 통한 높은 부가가치 창출

- 자기자본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,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어야 다양한 위험자산의 운용을 통해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
  - \* 투자은행의 주요 기능이 위험을 (일시적으로) 인수하고 관리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, 자산 등 보다는 자기자본이 중요

### ②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한 자금증개의 효율성 확보

- 자기자본은 그 자체로 안정적인 자금원이 될 뿐만 아니라,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(상환능력)를 가늠하는 척도
- 자기자본이 큰 경우 신용등급, 시장에서의 신뢰와 평판 등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자금 조달비용도 낮아짐

### ③ 대형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

- 대형 글로벌 M&A, 인프라사업, PF 투자 등은 충분한 위험 감내 능력과 자금조달 능력이 종합적으로 필요
- 대형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금융산업의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투자은행의 대형화가 절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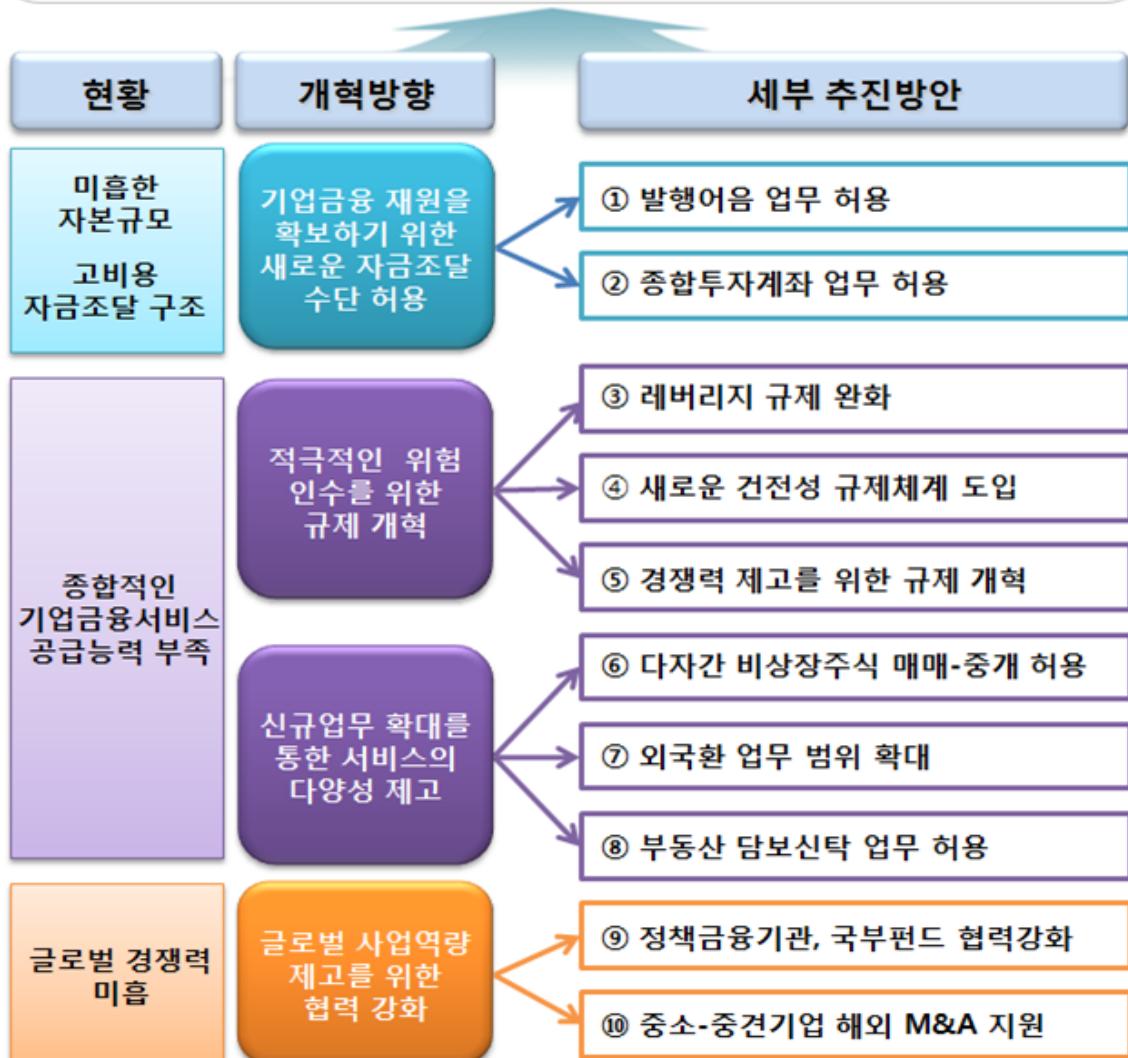
### ④ 해외 진출 등 국제적 사업 역량 확보

- 적극적인 해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해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및 손실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기자본 필요
- 자기자본이 큰 경우 국제적 신인도를 확보하는데 유리하며, 글로벌 M&A를 통한 해외 거점 확보도 용이

## II. 기본방향

- 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대형화를 유도하고, 기업금융 등 고부가 가치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
- ① 기업금융을 위한 자금을 다양하고 효율적인 형태로 조달.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증개 기능을 대폭 강화
  -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업모델을 감안한 별도의 건전성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규업무 추가
  -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글로벌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 금융기관, 국부펀드, 성장사다리 펀드 등과의 협력 확대

###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한 기업금융 활성화



### III. 세부 추진방안

#### 1 기업금융 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허용

- ◇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기업금융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허용

##### 1 발행어음 업무 허용 (자기자본 4조원 이상)

-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금융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\* (발행어음)의 발행업무 허용

\*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그 자신을 발행인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

- 발행어음은 발행절차가 간편\*하여 다수 투자자로부터 상시적인 자금수탁이 가능하고, ELS.RP와 같은 헤지자산.담보 관리 부담이 없는 등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

\* 발행어음은 공모규제(발행공시.신용평가 등)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, CMA 계좌와 결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등 활용도가 높음

-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부적인 운용규제는 최대한 간소화\*하되, 기업금융 의무비율 (예 : 최소 50%이상)을 두어 기업금융 확대에 우선 사용 유도

\* 개인여신, 기업금융과 무관한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는 규제

- 발행어음 업무와 함께 만기 1년 이내 어음에 대한 매매.증개.인수.보증업무 및 표지어음의 발행업무 등 어음을 매개로 한 기업금융 업무도 허용

- 과거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던 발행어음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 보호는 제공되지 않음

- 투자자에 대한 발행인의 지급여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발행 총량을 일정수준(예: 자기자본의 200%)으로 제한
- 운용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별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,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감독체계 구축

## 2 종합투자계좌(IMA) 업무 허용 (자기자본 8조원 이상)

-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금전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“종합투자계좌(Investment Management Account, IMA)” 업무 허용
    - \* 종합투자계좌에 예탁된 자금은 증권사의 신용위험에 노출되므로,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충분한 자기자본을 갖춘 증권사에만 허용
  - 종합투자계좌 예수금은 종금사 어음관리계좌와 유사하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원금 지급의무를 지고 운용수익은 사전 약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
    - 다만 종금사 어음관리계좌와 달리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 보호는 제공되지 않음
  -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, 기업금융 의무비율(예 : 최소 70%이상)을 설정하는 것은 발행어음과 유사
  -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별도의 운용 규제를 따르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
    - 회사채, 기업대출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집중하여 운용 하되 국공채, MMF 등 효율적 자산운용에 필요한 다양한 상품의 편입을 허용
- \* 개인여신, 기업금융과 무관한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는 규제

-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중위험 채권투자 등 모험자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단위로 투자위험을 통제하는 등 유연한 운용규제를 도입
  - 증권사의 운용전략에 따라 수시입출형, 만기상환형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
  - 종합투자계좌는 발행어음에 비해 보다 세부적인 운용규제\*를 받는 대신 양적 한도 없이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는 이점
- \* 주식·파생결합증권 등 편입 제한, 과도하게 위험하거나 집중된 운용 제한 등

#### 【 발행어음·종합투자계좌 주요내용 비교 】

	은행 정기예금	종금사 발행어음	발행어음	종합투자계좌
수익배분	확정금리형	확정금리형	확정금리형	실적배당형
발행제한	X	X	자기자본의 일정배수 이내 (예: 200%)	X
기업금융 의무비율	X	X	○ (예: 50%)	○ (예: 70%)
운용규제	X * 증권매입 제한 등 은행 인가범위에 따른 제한은 있음	X	○ * 개인여신 편입 제한 등 최소수준	○ * 회사채, 기업대출 중심 운용
계정분류	고유계정	고유계정	별도계정	별도계정
예금자 보호	○	○	X	X
레버리지 규제	-	X	X	X

## 2 원활한 기업금융 제공을 위한 규제개혁

- ◇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새로운 조달수단을 통해 마련한 기업금융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금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인수기능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들을 재정비

### 1 레버리지 규제 완화 (자기자본 4조원 이상)

- 발행어음, 종합투자계좌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레버리지 규제(총자산/자기자본<1,100%)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여력을 확충
  - \* '16.1분기 기준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레버리지 비율은 800%를 상회하고 있어 적극적인 기업금융 업무에 장애가 될 소지
- 발행어음,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은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등 강화된 관리·감독을 받게 되며, 별도의 **한도규제·운용규제** 등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
  - \* 현재 종금업 경영 증권사들의 종금계정 자산도 레버리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

### 2 새로운 건전성 규제체계 도입 (자기자본 3조원 이상)

- 현행 NCR 규제 등 건전성 규제체계는 기업 자금공급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본부담을 부과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을 제약한다는 비판
  - ⇒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주된 업무인 만큼, 영업모델의 차별성을 감안하여 건전성 규제를 재정비
- ① 대출자산의 형태, 만기 등에 관계없이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NCR 지표(NCR-II) 적용

- 현재는 우량 대출자산이더라도 만기가 일정기간 이상인 경우 채권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차감 → 대출자산의 건전성에 따라 영업용순자본에서 부분 차감하는 형태로 전환

\* (현행) 만기 3개월 초과 매입대출채권, 사모사채 등을 취득하거나,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할 경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채권액 전체(100%)를 차감하여 NCR비율이 크게 하락

→ (개선) 대출자산의 신용등급에 따라 채권액의 일부(AAA등급의 경우 1.6%, BBB 8%)만을 차감하여 건전성 부담을 완화

- 대출채권 매매, 사모사채 인수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금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, 기업에 대한 만기 1년 이상의 중장기 자금공급 능력도 확충

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, 조달·운용간의 만기 미스매치를 관리·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유동성 지표 도입

\* 투자은행은 대출자산을 유동화하여 매각하는 비중이 높아 대출자산이 증가하더라도 조달·운용간 만기불일치에 따른 위험은 관리 가능

→ 그러나 새로운 영업구조에 대한 선제적 건전성 관리를 위해 원화 유동성 비율(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),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(1개월간 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) 등 도입 검토

③ 여신건전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과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

\* (예) 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조정, ② 경영실태 평가시 대손충당금 적립현황·연체율·손실위험도 가중여신비율 등을 추가로 평가, ③ 금융회사 내부 위험관리 기준에 여신업무 관련 사항 대폭 강화 등

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업무를 영위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평가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적절한 건전성 통제체계 확립을 지원

## 【 여신업무 관련 NCR규제 적용방식 】

구분	취급현황
일반 증권사	<p>.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대출채권은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</p> <p>.금융감독원으로부터 리스크 관리기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업금융업무(증권인수 및 모집.매출주선, M&amp;A 중개.주선, PF금융) 관련 대출은 차감항목에서 제외</p>
종합금융투자사업자 (기준)	<p>.잔존만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기업 직접대출을 제외한 대출채권(사모사채, 환매조건부매수, 매입대출채권 등)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</p> <p>.잔존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기업대출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</p> <p>.기업금융업무(증권인수 및 모집.매출주선, M&amp;A 중개.주선, PF금융) 관련 대출은 차감항목에서 제외</p>
종합금융투자사업자 (개선 후)	<p>.대출채권은 만기.형태에 관계없이 차감항목에서 제외</p> <p>.대출채권의 만기가 길어지더라도 위험액 산정시 만기에 따른 위험가중치 할증을 하지 않음</p> <p>.유동성, 여신건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관리체계 마련</p>

### 3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

-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한도 증액 (자기자본 3조원 이상)
    -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, 기업 신용공여 업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
      - 현재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% 이내로 제한\* 되고 있는 기업신용공여를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%까지 허용
- \* 기업신용공여, 신용융자, 예탁증권담보대출 등을 합산하여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

## □ 합병 금융투자업자의 거래소 지분소유 한도 증액 (모든 증권사)

- 금융투자업자간 합병으로 거래소 지분소유한도(5%)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, 거래소 지분의 특성상 매각이 어려워\* 초과지분의 처리가 지연 → 위법상태 장기화, 혈값매각 우려 등
  - \* 비상장 주식으로 환금성이 떨어지고, 거래소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등 매각 장애요인이 있음
- 금융투자업자간 합병에 따라 거래소 지분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초과지분을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신설 추진

## 3 신규업무 확대를 통한 기업금융 서비스의 다양성 제고

- ◇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금융 관련 업무범위를 확대

### 1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.중개업무 허용 (자기자본 3조원 이상)

-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혁신적 비상장 중소기업 발굴 기능을 강화하고 비상장주식 매매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
-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다수 거래상대방에 대해 동시에 이루어지는 비상장주식의 매매.중개업무(내부주문집행)\*를 허용
  - \* 금융투자업자 내부에 거래소와 유사한 매매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수로부터 받은 주문을 처리하는 업무 방식
  - \* 현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매매주문 금액 1억원 이상의 상장주식 대량 주문을 거래소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에 기초한 가격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해 내부주문집행을 허용
- 금융투자협회 K-OTC 시장과 유사한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의 매매체결을 허용하는 등 거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병행

## 2 외국환 업무 범위 확대 (자기자본 4조원 이상)

-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업 고객과의 현물환 매매 업무를 허용하는 등 기업금융 관련 외국환업무를 확대
  - \* 현재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대고객 환전업무는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
-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에 맞춰 「외국환거래법」상 확인 보고의무 및 외환건전성 규제 등을 강화
- 금년 중 관계기관 공동 TF를 통해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

## 3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 허용 (자기자본 8조원 이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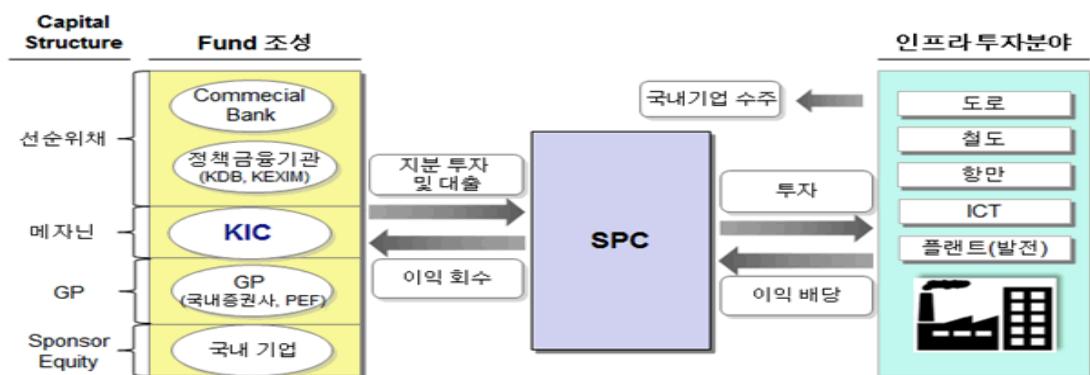
-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 자금공급 등에 있어 보다 종합적인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
- 현재 은행에만 제한적으로 겸업이 허용\*되어 있는 부동산 담보 신탁 업무를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허용
  - \* 전업 부동산신탁사외에는 은행에 대해서만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 겸업 허용
  - ※ 담보신탁업무의 절차
    - 위탁자가 자기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발급받은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(근저당의 대체수단)
    - 신탁회사는 수탁받은 부동산을 관리하는 한편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금융기관에 변제

##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글로벌 사업역량 확충

### 1 정책금융기관.국부펀드 협력강화

- 국내기업의 해외 인프라사업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주관하고 정책금융기관.한국투자공사(KIC) 등이 공동 투자하는 방안 추진
- 국내 기업이 수주한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.정책금융기관.KIC 등이 뒷받침함으로써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일조

#### 【 KIC와 해외 인프라 투자 공조방안(예시) 】



- 아울러, 국내기업.금융회사의 해외 M&A에 대해 KIC가 국내기업 등과 함께 공동투자자로 참여하여 국내기업.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

### 2 중소.중견기업 해외 M&A 지원

-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내 중소.중견기업\*의 해외 M&A를 주관하는 경우 성장사다리 M&A 펀드가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는 등 재무적 지원을 확대

\* 대기업.금융회사 해외진출, 대형 인프라 투자 등은 KIC가 중심이 되어 지원하고, 중소.중견기업은 성장사다리 M&A펀드가 지원하는 형태로 역할 분담

-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M&A 자문.주선을 담당하고,
  - 성장사다리 M&A펀드는 인수자금 또는 M&A 이후의 경영 안정.신규투자 자금을 지원하거나 공동 지분투자자로 참여

## IV.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 기준정책 추진방향

-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투자은행 출현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속적인 대형화 유도
  - 금번 방안은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수준\* 및 확충 가능성(이익유보.증자.M&A 등), 신규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실적인 수준에서 10조원 달성을 위한 중간단계를 마련한 것
- \*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기자본 현황('16.3월말, 조원)
  - ①미래+대우(6.7) ②NH(4.5) ③KB+현대(3.8) ④삼성(3.4) ⑤한투(3.2)
  - 미래+대우는 '15년말 기준 제시수치('16.7월 합병승인신청서)
  - KB+현대는 '16년 3월말 기준 자기자본의 단순합산치
- (i) 자기자본 3조원 이상 (ii) 자기자본 4조원 이상 (iii) 자기자본 8조원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신규업무 범위를 설정 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자기자본 확충 유도
  - ① 1차적으로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(자기자본 3조원 이상)가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기준과 여건을 마련
    - 3조원 보다 다소 높은 자기자본 수준(4조원 이상)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과 외국환업무 등을 허용하여 자기자본 확충 인센티브 제공
  - ② 자기자본이 10조원에 근접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(8조원 이상)에게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수단(종합투자계좌)과 신탁업무(부동산 담보신탁)를 허용하여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 여력 확대
  - ③ 자기자본이 4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에도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개선 사항\* 들은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업금융 업무 활성화 촉진

\* ① 새로운 건전성 규제(NCR-II) 적용, ② 기업 신용공여 한도 증액  
③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.중개업무 허용  
④ 정책금융기관.국부펀드.성장사다리펀드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

## 참고

## 자기자본 수준별 인센티브 제공 방안

자기자본	3조 이상 ~ 4조 미만	4조 이상 ~ 8조 미만	8조 이상
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

## 1. 기존 제도상 허용된 업무

프라임 브로커 업무	○	○	○
기업신용공여 (일반 신용공여와 합산 자기자본 100% 한도)	○ (좌동)	○ (좌동)	○ (좌동)

## 2. 금번 대책에서 추가 허용·규제 완화된 업무

## &lt; 기업금융을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허용 &gt;

발행어음	-	○ (자기자본 200% 한도)	○ (좌동)
종합금융투자계좌	-	-	○

## &lt; 원활한 기업금융 제공을 위한 규제개편 &gt;

레버리지 규제 적용제외	-	○ (발행어음 한정)	○ (발행어음 종투계좌 한정)
새로운 건전성 규제체계 마련	○	○	○
신용공여 한도 증액 * 기업 대출을 별도로 자기자본 100%까지 허용	○	○	○

## &lt; 신규업무 확대를 통한 종합 기업금융서비스 제공 &gt;

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·증개업무	○	○	○
기업환전 등 일반 외국환 업무	-	○	○
부동산 담보신탁	-	-	○

## &lt; 글로벌 사업역량 확충 &gt;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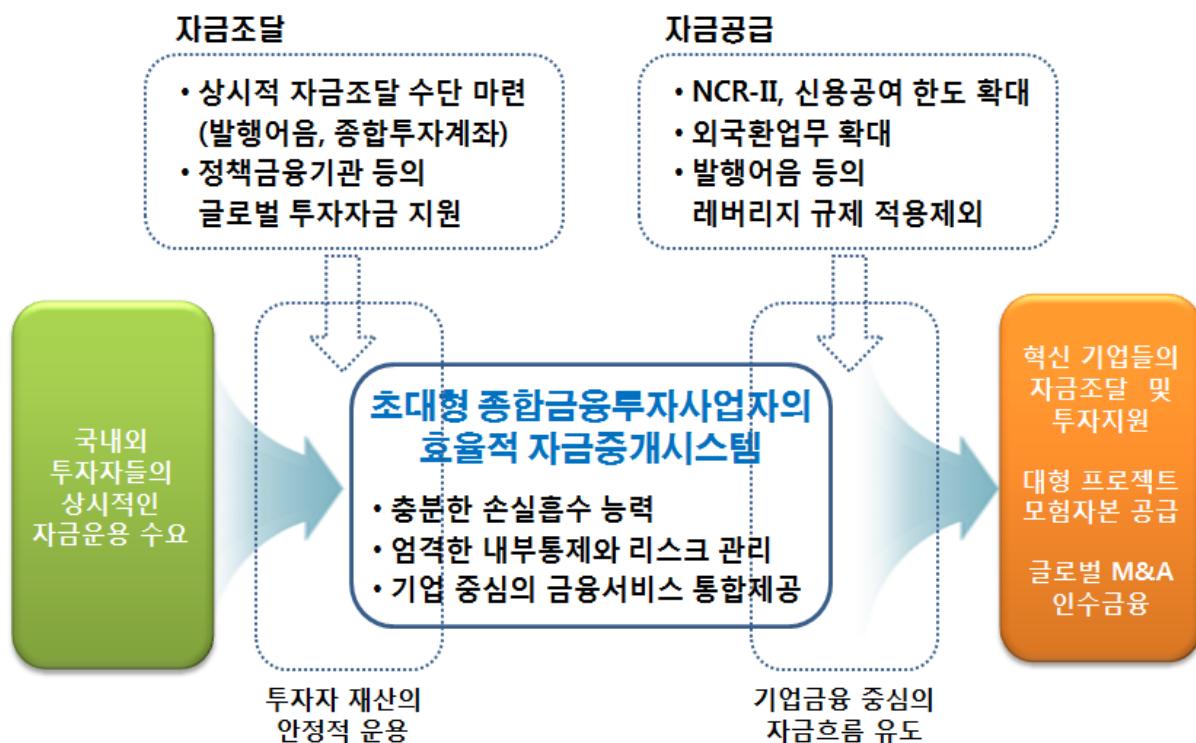
정책금융기관, 국부펀드 협력 강화	○	○	○
성장사다리 펀드 해외 M&A 지원	○	○	○

## IV. 기대효과

-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업 자체의 성장동력을 확보

### ① 기업금융 기능 강화

-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·운용 양 측면에서 활발한 기업금융 업무 수행을 가로막던 요인들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이 크게 제고



-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허용하고, 대출자산 등 기업자금 공급에 관한 건전성 규제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기업 자금 공급 업무에 특화된 규제체계를 구축
- 기업들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 CIB(Corporation & Investment Banking) 서비스 기반을 마련

## ② 대형화 유도

- 자기자본 수준별로 업무와 인센티브를 차등화 함으로써 증자, M&A 등을 통한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
  -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한 증권사들은 발행어음 등 새롭게 허용되는 자금조달 수단과 여러 가지 기업금융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
-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대형화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 대형화가 경쟁력으로 연결되고, 강화된 경쟁력이 추가적인 대형화를 촉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확립

## ③ 효율적 경쟁기반 마련

- 자본력, 엄격한 내부통제기준, 혁신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능력 등을 갖춘 증권사가 확실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
  - 금융투자산업의 경쟁구조를 가격중심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위한 질적 차별화 중심으로 전환
- 중개업에 편중된 우리 증권산업 구조가 “기업금융 중심의 투자은행”과 “위탁매매 중심의 중개업자”로 특화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

## ④ 해외진출 확대

-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정책금융기관, 국부펀드 등과 함께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
- 국내 기업과 금융산업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, M&A 등 글로벌 진출을 지원 할 수 있는 역량 확충

## V. 항후계획

-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'17년 본격 시행 추진
  - 하반기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발행어음·종합투자계좌 도입 및 건전성 규제 개편 등 추진
    - 증권사들의 '16년말 기준 자기자본 규모가 '17년 3월 중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'17년 2분기부터 시행
    - \* 시행 이후 업무를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
  -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및 글로벌 사업역량 제고방안은 기획·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하반기중 세부 방안을 협의·확정

⇒ 8월 중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,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업계·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

- 여타 자본시장 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
  - 자본시장 5대 개혁 과제 중 「공모펀드 활성화」, 「회사채 시장 제도개선」은 이미 발표하여 후속조치 추진 중
  - 금번 「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」에 이어 「상장·공모제도 개편방안」을 3/4분기 중 발표할 계획
  - 또한, 「장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및 ELS 등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」을 개혁 과제에 추가하여 추진\*함으로써 금융투자 산업과 자본시장의 건전한 성장·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임
- \* 3/4분기중 발표 계획

## 추진과제

## 조치사항

## 추진일정

## 1. 기업금융 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허용

 발행어음 업무 허용

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

'16.4Q

 종합투자계좌 업무 허용

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

'16.4Q

## 2. 원활한 기업금융 제공을 위한 규제 개혁

 레버리지 규제 적용 제외

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

'16.4Q

 새로운 건전성 규제체계 마련

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

'16.4Q

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

• 기업 신용공여 한도 증액

자본시장법 개정

'16.4Q

• 합병 증권사 거래소 지분제한 완화

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

'16.4Q

## 3. 신규업무 확대를 통한 기업금융서비스의 다양성 제고

 다자간 비상장주식 매매.증개 허용

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

'16.4Q

 외국환 업무 범위 확대

세부방안 확정

'16.4Q

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 허용

세부방안 확정

'16.4Q

## 4.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글로벌 사업역량 확충

 정책금융기관.국부펀드 협력강화협력 강화를 위한  
실무 프로세스 구축

'16.3Q

 중소.중견기업 해외 M&A지원

'16.3Q

## 참고

## 아시아지역 주요증권사 자기자본 현황

No.	국가	회사명	자기자본(조원)
1	일본	노무라홀딩스	28.1
2	중국	중신증권	25.6
3	중국	해통증권	21.1
4	중국	국태군안증권	15.7
5	중국	화태증권	14.7
6	중국	광발증권	13.6
7	일본	다이와홀딩스	13.3
8	말레이시아	CIMB	11.7
9	중국	국신증권	9.0
10	중국	초상증권	8.7
11	중국	광대증권	7.7
12	한국	미래에셋-대우증권 합병시	6.7 <sup>1)</sup>
13	일본	SMBC 닛코 증권	6.5
14	일본	미즈호 증권	6.4
15	중국	동방증권	6.4
16	중국	방정증권	5.6
17	한국	NH투자증권	4.5
18	대만	유안타	4.0
19	한국	KB투자증권-현대증권 합병시	3.8 <sup>2)</sup>
20	일본	미쓰비시UFJ모건스탠리 증권	3.7
21	중국	국원증권	3.6
22	중국	서남증권	3.5
23	한국	삼성증권	3.4
24	한국	한국투자증권	3.2

※ '15.12월말 기준 (일부 증권사 16.3월말 기준)

※ 1) 합병 후 '15년말 기준 추산치      2) '16.3월기준 자기자본 단순합산치

※ 자료 : 금융투자협회